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사법행정자문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및 다양한 의견수렴과 아울러 매년 검토 안건이 추가됨에 따른 검토의 충실화를 위하여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을 증원하고, 위원 연임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를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주요내용

-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분과위원회의 경우에도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마찬가지로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제6항 신설)
-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 정원을 종전 5인에서 7인으로 증원하고, 위원 결원 발생 시 임명절차와 위원의 연임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를 명시함(안 제10조)

4.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1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심급, 경력 등”을 각각 “심급, 경력, 연임 여부 등”으로, “4인 중 2인”을 각각 “6인 중 3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임명하는 위원의 일부가 결원이 되어 후임자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전국법원장회의 또는 전국법관대표회의로부터 그 임명할 위원 수의 2배수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임명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1년 9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 ④ (생 략)</p> <p>⑤ 분과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u>다만, 위원이 꺾워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u></p> <p><u><신 설></u></p> <p>⑥, ⑦ (생 략)</p> <p>제10조(법관인사분과위원회) ① ~ ② (생 략)</p>	<p>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p> <p><u><단서 삭제></u></p> <p>⑥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u>다만, 위원이 꺾워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u></p> <p>⑦, ⑧ (현행 제6항, 제7항과 같음)</p> <p>제10조(법관인사분과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p>

③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단서 신설>

1. (생략)
2.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심급,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법관 4인 중 2인
3.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심급,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법관 4인 중 2인

④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⑤ ~ ⑧ (생략)

③ -----

-----.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임명하는 위원의 일부가 결원이 되어 후임자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전국법원장회의 또는 전국법관대표회의로부터 그 임명할 위원 수의 2배수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임명한다.

1. (현행과 같음)
2. ----- 심급, 경력, 연임 여부 등-----
----- 6인 중 3인
3. ----- 심급, 경력, 연임 여부 등-----
----- 6인 중 3인

④ <단서 삭제>

⑤ ~ ⑧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289